

「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8. 16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8. 30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9. 2(금)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실장 탁동훈)

- 문구를 수정 명확히 함 (안 제10조 1, 2)
- 사망하여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의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0조 5 신설)
- 사망하여 안치되는 자의 70세 이상된 생존 배우자는 인접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0조 6 신설)
- 제10조 5호를 7호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수정

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 공설묘지의 시설 사용에 있어 주민이용편의와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봉안담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 임.

○ 주요 내용을 보면

- 공설묘지 사용자의 범위 규정 중 불명확한 문구를 수정하면서 봉안담에 안치되는 자의 배우자 유골을 화장하여 동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
- 70세 이상된 배우자가 인접한 봉안담을 사전에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우리군 의회에서 2011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한 내용과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해 봉안담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**

**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